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78

발의연월일 : 2022. 1. 26.

발 의 자 : 조명희 · 황보승희 · 양향자

김석기 · 성일종 · 이주환

이종배・홍문표・조경태

박대수 · 박성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,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·경제·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 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(이하 "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4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
	의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
	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
	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·
	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	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·
	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
	(이하 "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"
	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
	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
	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
	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
	<u>수 있다.</u>
	③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
	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